

아동 이용자에게 특화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이슈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나중연¹, 조은선^{2*}, 이승은²

¹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²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수료

Protecting Children's Online Privacy : Privacy Issues and Its Implications

Jong-Youn Rha¹, EunSun Cho^{2*}, SeungEun Lee²

¹Professor, Dep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²Doctoral candidate, Dep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최근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그들의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앱서비스를 대상으로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이슈를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도에 근거하여 이슈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아동 식별의 이슈, 고지 및 동의의 실효성 이슈,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익 이슈 등이 도출되었다. 현황분석을 통해 살펴본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아동식별,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Abstract As children's participation in online activities has recently increased, online services for children are also rapidly increasing, but children are not sufficiently guaranteed their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and analyze issues related to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issues in Korea through the current status and case studies of application services mainly used by children.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analyzed problems related to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cording to the stage of using the application.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content analysis, 1) issues of child identification, 2) effectiveness of notice and consent, and 3) issues of children's rights as subjects of information were derived.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alysis, the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based on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in the online environment, and suggestions were made for improvement.

Key Words : Children, Online privacy protection, Child identification, Privacy policy,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 an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KISA-WP-2019-0023)

*Corresponding Author : Eunsun Cho(eunsuncho@snu.ac.kr)

Received July 3, 2020

Revised October 8,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1. 서론

국제 인권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하며,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1]. 이러한 아동보호에 관한 원칙은 온라인 환경에서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즉,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아동은 사회 각 구성원들로부터 아동의 최선이 이익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보호받을 권리를 지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과 같은 법제를 인터넷 상용화 초기인 1998년에 제정하였다. 영국은 ICO를 통해 온라인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할 것을 강조하며 아동의 연령별 발달단계를 온라인 서비스 설계 시에 반영하도록 한 ‘연령적합설계규약(Age Applicationropriate design code)’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은 개인정보 맥락에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이 미래 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가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으로, 아동은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 권리를 명확히 인지할 수 없는 역량의 한계에 주목하고, 그에 따라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2]. 또한, 아동 개인정보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사업자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3, 4].

그러나 최근 온라인 개인정보 맥락에서 아동과 관련한 상황을 살펴보면 아동들은 그들의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는 이용자가 아동이라는 것을 식별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14세 이하 아동임을 식별한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의 아동 개인정보보호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동의 및 철회, 열람, 오류정정 등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고, 패밀리 계정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온라인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국내법은 아동의 위치정보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받는 방식을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5].

그러나 익명성이 강조되는 국내 온라인 환경에서는 비로그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원가입이나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게임의 경우 비로그인 상태에서 닉네임을 입력한 후 게임을 바로 실행할 수 있거나, 거짓 정보로 회원가입을 쉽게 하고 온라인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고지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이용자들이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 활용 내용의 고지 및 동의를 절차 역시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아동을 비롯한 법정대리인까지도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절차를 수행하기 어렵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동이 정보주체로서 마땅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익이 올바르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고지를 통해 실질적인 동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을 근거로 국내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이슈를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이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아동의 앱 이용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관련 법에 근거하여 구조화하였다(Table 1).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국내 법과 영국의 ICO연령적합설계, 미국의 COPPA법 등을 검토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범위와 원칙, 권리의 차원으로 구성하여 아동식별이슈와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에 관련한 이슈, 아동의 권익 보호에 있어 크게 3가지 이슈를

Table 1. Research Framework

Issues		
Scope	1. Identify children effectively and practically	1-1. Non-login
		1-2. Sign up process with using fake information
Principle	2. Consent to collecting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2-1. Comprehensive consent to collecting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2-2. Difference between consent and actual use
		2-3. Difficulty to understand terms of use
Right	3. Protect children's right and interest	3-1. Advertisement
		3-2. Membership withdrawal & persistency

도출할 수 있었다.

2.1 아동식별의 이슈

2.1.1 연령확인 절차의 부재

아동은 스스로 개인정보 및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내법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제4조 6의 2)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한다[7]. 그러나 실제로 아동이 이용하는 앱 서비스들 가운데, 앱 다운로드 후 별도의 연령 확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입력 후 별도의 연령 확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없이 회원가입이 이루어졌다. 비로그인 상태에서 닉네임을 입력한 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임 앱의 경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웹사이트로 연동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살펴본 결과, IP주소 및 모바일 장치 식별자, 쿠키 및 유사 기술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 위치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1).

2.1.2 허위정보를 통한 가입

정보통신망법 제31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앱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4]. 그러나 실제로 아동이 이용하는 앱 서비스들 가운데, 앱 다운로드 후 별도의 정확한 연령 확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통한 회원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거나 허위 정보로 쉽게 회원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Fig. 1. Privacy Policy of Game Application

원칙적으로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앱에서 해당 원칙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회원가입 절차를 살펴보았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은 회원가입을 전제로 앱 활동이 시작되며, 일정 연령 이상(만 12세~14세)으로 이용자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일부 앱의 경우에는 별도의 연령확인 절차가 없었다.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전화번호와 이메일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보다 쉬운 이메일 방식으로 가입을 시도한 결과 이메일을 통한 인증절차 없이 계정을 단순히 입력만해도 쉽게 회원가입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이메일 인증 절차가 따로 없다보니 허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도 가입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연령 제한의 실효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부 앱에서는 회원가입 절차 중에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단계를 통해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허위로 성인의 나이로 가입을 시도해본 결과, 아동용 이메일 계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Fig. 3). 최근 SNS가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만 14세 이하의 아동이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이와 같이 허위정보를 이용하여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



Fig. 2. Sign up process of SNS Application



Fig. 3. Sign up process with fake information

2.2 고지 및 동의의 실효성 이슈

2.2.1 포괄적인 동의 절차

정보통신망법 제2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8]. 일반적으로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앱 환경에서는 비로그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가 간소화된 경우가 많다.

비로그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임 앱의 경우, 나이를 선택하는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인은 사용자 계약과 EA 개인정보 및 쿠키 정책을 읽고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으며(Fig. 4),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창을 생성하여 확인해야 한다.



Fig. 4. Comprehensive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1

한편, 접근권한의 포괄적 동의 방식 사례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의 접근에 대한 정보 이외에는 선택 접근권한으로 이용자의 선택이 보장되어야하나, ‘일부 권한 필요’ 등 일괄적으로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Fig. 5) 이용자의 통제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개인정보의 유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인지하기 어려운 아동의 경우에는 포괄적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 없이 형식적인 동의 절차가 수행될 개연성이 더욱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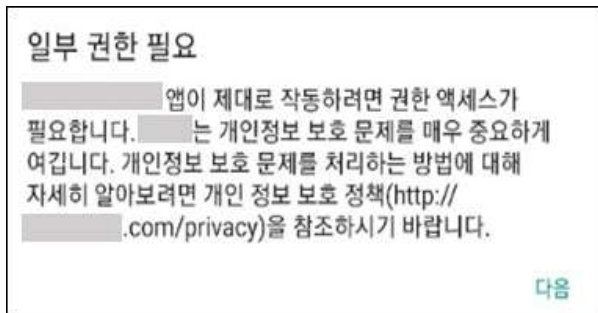


Fig. 5. Comprehensive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2

2.2.2 고지 및 동의와 실제 이용 시점의 차이

위치정보법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4]. 이와 같이 위치정보법은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비로그인 방식으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한 앱 서비스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이뤄지게 되는데, 해당 시점과 위치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시점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많은 앱에서 위치정보 사용 동의는 회원가입 및 법정대리인 동의 시점이 아닌, 앱을 실행할 때 별도의 팝업으로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ICO연령적합설계에서는 기본설정값을 해제로 두고, 위치 추적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아동에게 가시성 있는 알람을 제공하며 사용 이후에는 비활성화된 값으로 돌아가게 해야 함을 명시하였다[9, 10].

일부 앱에서는 ‘앱을 사용하는 동안/항상 허용/허용안함’의 3가지 방식으로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활성화될 수 있는 선택을 옵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앱에서 ‘허용함/허용안함’의 이분적인 동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Fig. 6). 실행 초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 기본 설정값이 활성화 상태로 적용되며, 이후 위치정보 사용 동의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스스로 환경설정을 변경해야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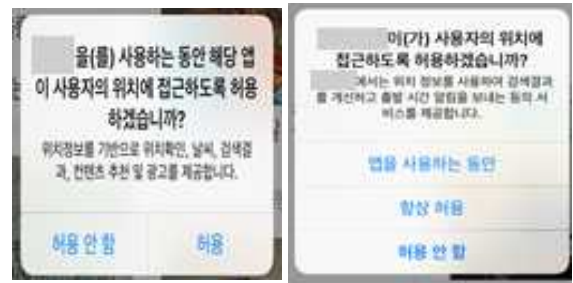


Fig. 6. Consent to Collecting and Use of Geolocation Information

2.2.3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와 방식

2018년에 신설된 망법 제22조 3항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2]. 또한 ICO 연령적합설계에서는 ‘오디오/비디오/글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연령대 별로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아동에게 제공, 부모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하며, 부모가 아동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9]. 그러나 분석 대상의 앱 중, 대부분의 앱에서는 아동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의 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약관을 터치하면, 앱이 아닌 별도의 웹페이지가 생성되며 게임 제작사 사이트로 연결이 된다. 일부 앱의 경우 한글을 지원하지만, 영어로 제공되는 경우들로 인해 아동 혹은 부모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Fig.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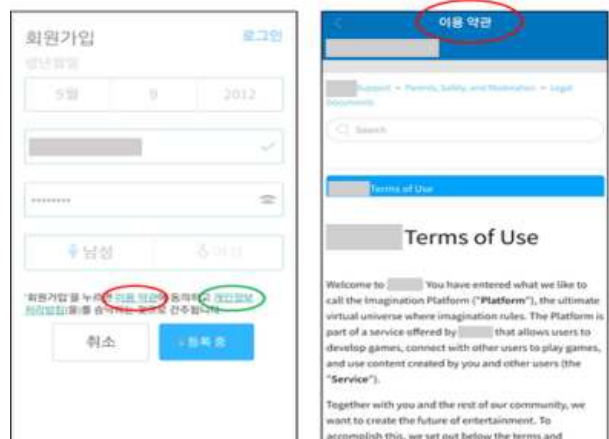


Fig. 7. Terms of Use (International Application)

한편, 일부 앱에서는 가입 절차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에 관련하여 어린이용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Fig. 8). 그러나 줄글 형식으로 구성되어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이해의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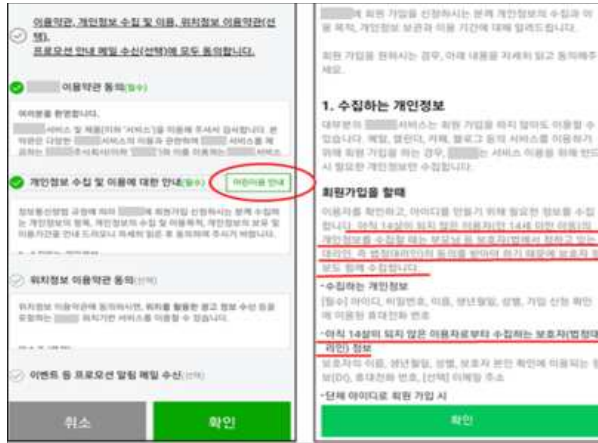


Fig. 8. Terms of Use for Children

2.3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익 이슈

2.3.1 광고

청소년보호법 제1조에서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1]. 아동은 광고와 콘텐츠를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부족하다. 아동이 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앱의 경우, 콘텐츠 자체가 아동의 구매 욕구를 유발하는 캐릭터 상품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를 홍보하려는 목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이러한 맞춤형 광고를 할 경우 아동은 더 쉽게 판단력을 잃기 쉬울 것이다.

유아용 앱의 경우, 아동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영상 앱이지만 콘텐츠 자체가 아동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캐릭터 관련 동영상이거나 장난감과 같은 소비상품인 경우가 많았다(Fig. 9).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장난감 등의 광고는 아동의 소비욕구를 자극한다.

또한 몇몇 유아용 앱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나타났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는 아니지만, 아동에게 부적절한 광고 내용이 노출되면서 아동은 혼란스럽거나 무비판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앱을 실행해 콘텐츠를 이용하다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앱 화면 전체에 자동차 렌트에 관한 광고가 등장하는 사례도 있었다(Fig. 10). 일부 앱에서는 앱 화면 하단에 성인

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관련 앱을 광고하는 배너가 지속적으로 화면에 나타났다.



Fig. 9. Advertisements and Contents for Children



Fig. 10. Advertisement for Adult on Child's Application

2.3.2 정보의 지속성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 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2].

아동이 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앱을 삭제할 수 있다. 하지만 앱에 축적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원탈퇴시 앱을 이용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삭제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개인정보정책에 명시되어 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앱을 앱을 설치한 기기에서 삭제할 때는 반드시 회원 탈퇴를 해야 사업자에서도 개인정보가 함께 지워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아동은 물론 아동의 보호자(법정대리인)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아동의 경우 탈퇴하지 않게 되면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정보가 축적되기 때문에 탈퇴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미취학 아동과 달리 취학 아동의 경우 기기의 이용자와 앱 이용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아동의 개인정보가 축적되며 위치정보 및 이용내역 등 하나의 식별정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다수의 앱에서는 회원이 직접 회원가입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회원탈퇴를 해야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11). 이와 같이 대부분의 앱이 회원탈퇴시 정보를 파기하였고, 1년 이상 앱을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를 분리하여 따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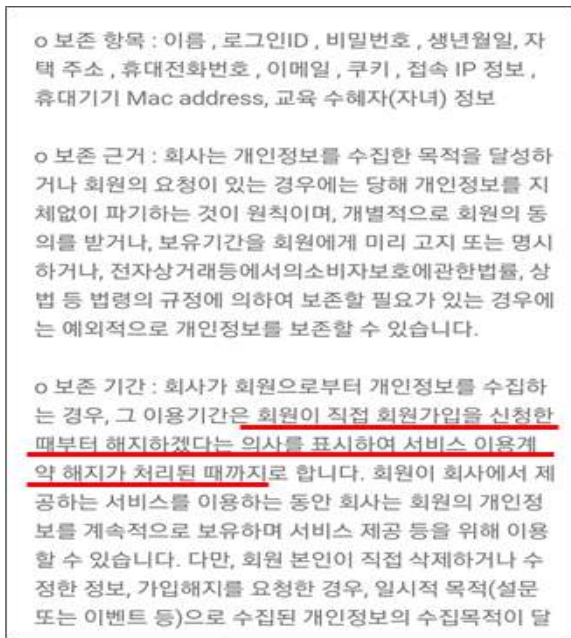


Fig. 11. Terms of Use (Membership Withdrawal)

3. 결론 및 제언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요약하고, 도출된 이슈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식별에 따른 보호 메커니즘은 한계가 있다. 현재의 온라인 아동 보호 메커니즘은 아동임을 식별하고 난 후에 법정대리인 동의절차 및 이용제한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황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아동이 이용하는 앱 중에서 다운로드 후 별도의 연령 확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확인을 통한 아동 식별 절차가 없다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아동이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도 존재했다. 또한 비로그인 방식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고지 및 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쿠키 및 기기, 이용행태에 따른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위 정보를 통한 회원가입이 용이하다는 점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 아

동 식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종합해보면 아동 식별이 전제가 되는 현재의 아동 보호 메커니즘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보호의 원칙이 의도대로 실현될 수 있는 보완수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실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아동 개인정보보호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킨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미국 COPPA법에서는 ‘아동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동에게 매력적인 유명인의 등장 등 아동 대상 운영자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13,14], 영국 정보사회서비스(ISS)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국 아동이 접근하거나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15]. 이는 폭넓은 범위에서 현실적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판단근거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가 요구된다. 현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고지는 많은 내용을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고, 비로그인 방식의 이용, 소셜로그인 등 절차의 편의성이 높아졌지만 서비스마다 다른 정보제공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동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고지를 통해 실질적인 동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개인정보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표준화된 동의 방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만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정보를 강조하여 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의 권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ICO 연령 적합설계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강조하며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와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자유를 핵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익 보호를 이해하는데 주요 근거로 작용한다. 또한 아동은 성장과정에 있는 미완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동기에 이용한 서비스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보관하고 축적하여 필터링 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아동의 데이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일정 기간 보관 후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자체적으로 데이

터를 폐기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이용자가 쉽게 탈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탈퇴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가 축적되거나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명시적인 고지를 해야할 것이다. 또한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회원 탈퇴 절차의 중요성과 개인정보 보관기관 등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짐으로써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할 것이다.

REFERENCES

- [1]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c.aspx>
- [2]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rticle 22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etc.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83%81%EB%B2%95#J22:0>
- [3]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rticle 31 Legal agent's right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83%81%EB%B2%95#J31:0>
- [4]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5 Legal agent's right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83%81%EB%B2%95#J25:0>
- [5]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6 Use of location information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8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83%81%EB%B2%95#J25:0>
- [6] KISA(2019). Survey on Internet Usage in 2018
- [7]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rticle 4 6-2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83%81%EB%B2%95#J4:0>
- [8]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2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etc.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83%81%EB%B2%95#J22:0>
- [9] UK's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Age Applicationropriate design: a code of practice for online services <https://ico.org.uk/for-organisations/guide-to-data-protection/key-data-protection-themes/age-Applicationropriate-design-a-code-of-practice-for-online-services/1-best-interests-of-the-child/>
- [10] European Union(2016).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11] Youth Protection Act Article 1 Purpose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83%81%EB%B2%95#undefined>
- [12]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rticle 29 Destr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B%B2%95#J29:0>
- [13] Federal Trade Commission(1998).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 [14] Federal Trade Commission(2002). Protecting Children's Privacy Under COPPA: A Survey on Compliance.
- [15] United Kingdom Act of Parliament(2018), "Data Protection Act"

나 중 연(Jong-Youn Rha)

[정회원]



- 1996년 2월 :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부(학사)
- 1998년 2월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석사)
- 2002년 5월 : The Ohio State University, Dept. of Consumer and Textile Science(박사)
- 2002년 7월 ~ 2003년 8월 : University of Delaware, Dept. of Consumer Science, 조교수
- 2004년 8월 ~ 현재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관심분야 : ICT 소비자정책, 빅데이터 활용과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의 조화, ICT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후생
- E-Mail : jrha@snu.ac.kr

조 은 선(Eunsun Cho)

[정회원]



- 2012년 8월 : 경희대학교 무역학과(학사)
- 2014년 8월 : 경희대학교 무역학과(경영학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박사과정)
- 관심분야 : ICT 환경의 소비자행동, 소비자 정보 탐색,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행동과 의사결정 모델

· E-Mail : eunsuncho@snu.ac.kr

이 승 은 (Seung-Eun Lee)

[정회원]



- 2008년 2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학사)
- 2012년 2월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ICT 환경에서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ICT 환경에서의 소비자사회화

· E-Mail : seungeun@snu.ac.kr